

감 사 원

통 보

제 목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기준 부적정

소 관 기 관 환경부

조 치 기 관 환경부

내 용

1. 업무 개요

환경부는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단위단가(원/m³, 이하 “단위단가”라 한다) 산정기준 등을 포함한 「하수도 조례 기준」을 마련한 뒤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참고하여 관련 조례를 정하도록 통보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고,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환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데 사용할 표준식이 포함된 「표준 하수도 조례 기준」을 마련하여 1995년 3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이후 몇 차례 개정 작업을 거쳐 2007년 10월 「하수도 조례 기준」을 마지막으로 통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하수도 조례 기준」 제21조, 제23조 및 [별표 5]와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 제12조 및 [별표 2] 등에 따르면 단위단가는 다음과 같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눈 후 목표시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 단위단가 산식(2007년 환경부 「하수도 조례 기준」) 】

- ▶ m^3 당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시설용량(m^3 /일) $\times\alpha$
- α : 목표시점 물가상승률, $(1+\text{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100)^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따라서 환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단위단가를 잘못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수도 조례 기준」의 단위단가 산식에 목표시점 물가상승률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목표시점 물가상승률’(α)은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n) 동안의 각 연도별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 $[(1+R_1)\times\cdots\times(1+R_n)]$ 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기존 산식으로 목표시점 물가상승률을 산정할 경우 통계학적⁵³⁾으로 ‘기하평균’은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자료의 비율에 대한 대푯값 등 성장률의 평균을 구할 때 유용하므로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기하평균값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수학적으로도 산술평균값은 언제나 기하평균값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산술평균값으로 산정될 경우, 기하평균값으로 산정될 경우보다 단위단가가 높게 산출되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과다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18. 4. 23.~5. 18.) 중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2017년 기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별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다 부과 현황(2017년 기준)”과 같이 부산광역시 등 5개 광역시⁵⁴⁾는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산술평균값으로 하여 단위단가를 산출함으로써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기하평균값으로 할 경우보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높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산광역시는 단위단가에 대하여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기하평균값으로 하여 재산정할 경우의 단위단가인 1,113,000원/m³보다 54,000원/m³ 높은 1,167,000원/m³로 결정·고시함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재산정했을 때의 33,559,176,000원(오수량: 30,152m³/일)보다 1,628,208,000원 많은 35,187,384,000원

53) 이훈영, “이훈영 교수의 통계학”, 2010년, 70페이지

54)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으로 부과하는 등 부산광역시 등 5개 광역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재산정했을 때보다 각각 최소 166,440,000원, 최대 1,628,208,000원, 총 3,234,018,760원 많이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환경부는 감사결과의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출하는 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 산식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환경부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수도 조례 기준」의 단위단가 산식에 목표시점 물가 상승률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다 부과 현황(2017년 기준)

(단위: m³/일, 원/m³, 원)

구분	부과대상 오수량 (A)	단위단가			부과 금액		
		고시 (산술평균, B)	재산정 (기하평균, C)	차이 (B-C)	고시기준 (D=A×B)	재산정시 (E=A×C)	차이 (D-E)
계	83,198	-	-	-	-	-	3,234,018,760
부산광역시	30,152	1,167,000	1,113,000	54,000	35,187,384,000	33,559,176,000	1,628,208,000
인천광역시	16,482	1,280,000	1,250,000	30,000	21,096,960,000	20,602,500,000	494,460,000
광주광역시	18,426	904,000	862,000	42,000	16,657,104,000	15,883,212,000	773,892,000
대구광역시	13,870	1,294,000	1,282,000	12,000	17,947,780,000	17,781,340,000	166,440,000
대전광역시	4,268	730,070	690,000	40,070	3,115,938,760	2,944,920,000	171,018,760

주: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는 기하평균값을 적용하여 단위단가를 산출하여 제외. 단, 울산광역시는 2014년 기하평균 값으로 단위단가를 산출하였으나 증·신축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급증으로 2013년 단위단가인 1,344,000원/m³보다 669,013원/m³ 높은 2,013,013원/m³로 산출되자 급격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상승에 따른 민원 등을 우려하여 물가상승률만 반영한 1,421,000원/m³로 결정·공고한 이후 2018년까지 변경 없이 적용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재구성